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09. 10. 19(월)

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9. 9. 28

나. 발 의 자 : 최만용·한도섭 의원 외 8인

다. 회부일자 : 2009. 9. 28

라. 상정일자 : 2009. 10. 14(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최만용 의원
- 검토보고 : 산업전문위원 박명성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정용 이외의 동일건물 내 영업용, 업무용, 옥탕용에도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2호이상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각호별, 각 점포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함.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현행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는

- 가정용과 급수업종이 다른 일반용, 옥탕용에는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으나, 동일한 업종간에는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없음.
- 여러개의 점포가 한개의 메인계량기만 사용함으로 각 점포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진율 적용으로 세입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.
-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2005년 1월 17일 본부장방침으로 복합상가주택의 경우 요금 분리를 위한 별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. 금번 조례안 발의로 법적 근거에서 보다 안정적인 서민생활에 기여하고, 특히 영세 상인들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 경감으로 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수전의 분리는 신청자에게 개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신청자가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, 건축주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시설과 화장실 등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, 본부에서는 향후 수전수 증가에 따른 검침인원 증가와 그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됨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강석봉 의원

- 한건물에 동일업종이 누진율을 피하기 위해 세대별 계량기를 많이 설치할 경우 제재 방안은

○ 강창규 의원

- 개별 계량기 설치로 검침인원 증원을 해야 하는데 대책은
-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시설과 화장실 등 관리대책은
- 현재 검침인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

○ 김성숙 의원

- 고질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간의 본부장 방침으로 시행하였다고 하는데 조례 개정을 못한 사유는

< 답 변 >

○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철

- 누진율을 피하기 위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함으로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- 현재 140명이 하고 있는데 향후 수전수가 증가하면 증원해야 합니다.
- 건물 임대 계약시 건축주가 공동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세대주와 협의하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조례를 개정 못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소홀입니다.

○ 최만용 의원

-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정용 이외의 동일 건물 내 영업용, 업무용, 옥탕용에도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여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함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한도섭, 박희경, 강석봉, 강창규, 김성숙, 김을태, 신영은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7명)

7. 기타 특이사항

- “ 없음 ”

8. 붙임

-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시설분담금)”을 “(계량기 및 시설분담금)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공동주택”을 “공동주택 및 상가점포”로, “검침하거나 각호별료”를 “검침하거나 각호별, 점포별료”로, “시설분담금은 각호별료”를 “시설분담금은 각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, 점포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”를 “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